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특 별 부

2000. 10. 6. 판결선고	
2000. 10. 6. 원본영수	인

판 결

사 건 2000누7492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김

서울

2. 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소송수행자 곽

변론종결 2000. 9. 22.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26. 선고 2000구22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1. 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및 항소취지

한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6.

재판장

판사

김복민

판사

이건웅

판사

이정미